

의안번호	2213618
의 퇴 인	임미애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 계 번호	25D5584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군·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9억 1,600만원씩 5년간 총 145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사정토지조사위원회 설치 (안 제6조) 및 구성(안 제8조)	2,916	2,916	2,916	2,916	2,916	14,5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사정토지조사위원회의 설치)	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 미등기 사정토지조사위원회와 광역시도에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조사위원회(이하 시군 사정토지위원회와 광역시도 사정토지위원회를 합하여 “사정토지위원회”라 함)를 둔	의무규정
	안 제8조(사정토지위원회의 구성)	사정토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사람으로 구성 -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- 대장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-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- 해당 구역의 읍장·면장 또는 동장 1명 <u>- 변호사, 법무사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장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</u> <u>-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대장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</u>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사정토지조사위원회의 설치)	0	—
	안 제8조(사정토지위원회의 구성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정토지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하며,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- 대법원의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 제2조¹⁾에 따르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본 개정안의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회의참석수당 대상을 한정하여 추계함
- 변호사, 법무사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,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 2명 등 총 4명의 외부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됨
-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, 대장소관청 소속 5급 이상

1)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 제2조(참석수당) ① 대법원(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포함)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(연구반, TFT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참석한 위원(연구반원, TFT팀원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1일당 150,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.

다만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공무원,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, 해당 구역의 읍장, 면장, 동장의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서 외부위원이 아니므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음

- 본 추계에서 사정토지위원회 회의횟수는 연도별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, 매월 1회씩 연 1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²⁾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
- 회의참석수당 단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추계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위원회별 외부위원의 수에 연간 회의 횟수, 회의참석수당 단가,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합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곱하여 추계함
 - 2025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26개,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17개임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군·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9억 1,600만원씩 5년간 총 145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2)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기획재정부)

·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·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회, 개,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사정토지 위원회의 설치(안제 6조) 및 구성(안제 8조)	민간위원	4	4	4	4	4	—	—
	회의횟수	12	12	12	12	12	—	—
	수당단가	0.25	0.25	0.25	0.25	0.25	—	—
	지방자치단체의 수(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자치단체의 수를 합산)	243	243	243	243	243	—	—
	추가재정소요	2,916	2,916	2,916	2,916	2,916	14,580	2,916

주 1. 본 추계는 사정토지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만 추계한 것임

2. 본 추계에서 사정토지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심의위원회 회의횟수를 연도별 12회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그 횟수가 달라지면 추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사정토지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만 추계한 것이며, 사정토지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회의횟수를 연도별 12회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그 횟수가 달라지면 추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